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품목 확대 필요하다



양창욱

(한국축산기자재협회 부회장)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적용품목 50가지가 지난 3월 30일 총리령 제493호로 공포되었다. 반가운 일이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이번 영세율 적용 문제는 근 2년여의 지루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국가경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반적 차원으로 축산기자재가 다뤄졌다는 점에서 반갑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품목 발표후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품목결정을 두고 즉각 「축산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나 「행정편의주의」니 하는 등의 정부를 비난하는 많은 항의와 불만이 제기되었다. 그렇다. 분명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련되는 동안 그 추이를 지켜본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몹시 아쉬웠던 것은 '86년도 UR이 거론되었을 때 우리의 축산업도 <생산량 증대>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축산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재빨리 세워지지 못했다는 점이며 재경원 측도 축산기자재산업은 고사하고 축산업 전체를 국가경영산업에 있어 극히 미미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점이다.

'92년도 본 협회가 창립되면서 제일 먼저 구추했던 것은 <축산기자재의 품목분류> 고시였다. 그러나 우리의 축산업은 가축사양, 사료, 동물약품, 종축개량과 축산물 유통중심의 행정이었기 때문에 축산업의 중요한 기반산업으로 등장한 축산기자재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을 펴지는 못했다. 이것이 오늘날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품목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더불어 기간중 농림수산부나 재정경제원의 주무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축산기자재의 영세율 적용품목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축산 사양가 단체에서도 관련부서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축산기자재업체가 영세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협조적이었던 일부 기자재업체의 무관심도 큰 장애요소의 하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경원 측은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을 양측농가에 직접 필요한 기자재로 우선 선정하되 규격표준화가 된 것, 대중성이 있을 것, 타 산

업과의 범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품목선정에 들어 갔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축산기자재는 그 품목분류는 고사하고 객관적인 통계조차 변변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품목이 갈리고 양계사양에 없어서는 안될 점등기가 누락되었으며 타산업과 범용성이 있다하여 바닥재충철망, 축산용 저울, 열풍기, 환기장치, 열풍기, 원치커텐, 연속주사기 등이 빠졌다.

이제 축산은 축산업자 끼리의 산업은 아니다. 생산해 내면 팔리는 그런 부업차원의 산업은 더더욱 아니다. 외국 축산물이 WTO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이 생산해 내는 가격보다 매년 더 싼 값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토불이 등 애국심에 호소해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값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해내야 하는 데 그것은 축산자동화 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축산기자재는 농기계라고 하면서도 정작 농기계 행정에는 축산기자재가 빠져있고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농기계 반값 적용에도 제외되어 있는 현실에서 축산기자재가 일반 산업에 관련지어져서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백년하청(百年河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축산기자재가 기계라하여 통산부 소관이라 하는 견해도 있으나 산업분류조차 없는 상황에서 업무편제가 없는 타 부처소관으로 모는 것은 <삼계탕>에 삼이 들어가므로 전매청 소관이라하는 것과 진배 없다. 따라서 축산기자재는 가축생태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축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 공히 다루어져야 할 분야인 것이다. 그것이 오늘 날까지 업무가 편재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이유로 소외된다면 축산업의 발전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문제가 세계상 가격인하의 측면에서만 다뤄진다면 양축가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축산기자재가 부가세 개념을 가지고 거래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부가세영세율이 양축농가에게 주는 혜택은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축산기자재는 그 가격의 고가임을 감안하면 A/S 처리가 생명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세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투자도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 기업의 법인화가 부진하였으며 따라서 대양축가 A/S 처리가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의 축산기자재 산업은 무엇보다 컨소시엄 구축으로 자동화의 시스템화가 시급한 실정인 바 이번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은 그러한 점에서 축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축산기자재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기자재분류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와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이 확대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기자재 생산업체의 단합된 모습과 함께 뼈대를 갖추고저 하는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 태세 즉, <축산기자재규칙>같은 것으로 기자재에 대한 수출입 및 내수 생산판매 통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축산업이 <경제성 있는 축산물 생산뿐 아니라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 모두에게 홍보하고 그에 걸맞는 기반산업으로서 축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년에 20~30일을 사용하는 농기계와는 달리 축산기자재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필수자재이며 축산농가의 자동화없이는 국제경쟁력에 맞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축산물이 우리 국민 식생활에서 고단백을 제공하는 빼어놓을 수 없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피의 주범으로 몰리고 돼지, 닭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상승 주범으로 몰리는 안타까운 현상은 남의 탓만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중 축산의 자동기계화가 가장 첩경인 까닭인 것이기 때문이다.